


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, 「파인」 (fine.fss.or.kr)으로 검색하세요

“금융은 튼튼하게, 소비자는 행복하게”



	보 도 자 료		
	보도	2016. 11. 24.(목) 조간	배포

담당부서	보험감리실	이창욱 실장 (3145-8220)	조남경 팀장 (3145-8230) 윤영준 팀장 (3145-8240)
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---	--

제 목 : 보험회사의 불합리한 보험계약 부활 관행 개선

(「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」 과제 11)
(금융권에 내재된 불합리한 영업관행 시정) 세부추진계획)

- ▶ 보험계약 부활시 일부 보장내용만 선택하여 부활하거나 보험가입 금액을 감액하여 부활할 수 있도록 개선

I . 추진배경

- 금융감독원은 「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」을 통해
 -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거나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하나하나 찾아내 개선해 나가고 있음
- 그 일환으로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상태인 보험계약을 부활할 경우,
 - 소비자가 원치 않는 일부 보장내용(특약)을 제외하거나 보험 가입금액을 감액하여 부활하는 것을 불허함에 따라
 - 소비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함

II. 현황 및 문제점

- (현황)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상태*인 계약을 부활할 경우에는 기존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상태로만 부활이 가능

* 보험료 납입 연체로 실효가 되었으나 계약자가 아직 해지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상태로 동 기간중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상하지 않음

- 실효계약에 대해 계약자는 3년 이내에 연체보험료 및 이자를 납입하고 보험계약 부활을 청약할 수 있고, 보험회사는 심사를 거쳐 승낙여부 결정

실효계약 및 부활계약 현황('16.1~6월 기준)

실효건수(A)	부활건수(B)	비중(B/A)
535만건	147만건	27.4%

- (문제점) 보험계약 부활시 계약자가 사정 변경 또는 연체보험료 납입부담 등으로 일부 불필요한 보장내용(특약)을 제외하거나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원하더라도

- 연체된 보험료(이자 포함)를 모두 납입하여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한 후 일부 보장내용(특약) 해지 등의 별도 절차를 거쳐 계약 변경이 가능

➔ 계약자가 연체이자 납입부담 및 복잡한 절차 때문에 부활을 기피하고, 대신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는 등 소비자의 부담과 불편 발생

부활관련 민원 사례

- ◆ 민원인은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계약에 대해 보험가입금액을 감액(1억원→5천만원)하여 부활하고자 하였으나, 보험회사는 약관 및 내부규정에 따라 일단 기존 계약사항대로 연체보험료 전액(연체이자 포함)을 납입하기를 요구하면서 부활을 거절

III. 개선방안

- 부활시 계약내용중 일부 보장(특약)을 제외하거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여 부활이 가능하도록 관련 업무절차*를 개선

* 보험약관상 부활관련 업무절차를 회사가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

< 부활업무 관행 개선 전후 부활보험료 비교(예시) >

☑(개선前) 상해보험에 가입한 강진하씨는 5년동안 보험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그 후 1년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실효된 상태에서

자동차 운전을 중지하게 되어 관련 담보가 필요하지 않아 “운전자별금, 교통사고처리지원금”을 제외하고 부활할 것을 희망하였으나.

A보험사가 불필요한 담보까지 포함한 모든 담보에 대하여 부활절차를 거친 후 해당 특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연체보험료 전액(17.7만원) 납입

☑(개선後) 강진하씨는 운전자관련 담보를 제외한 나머지 보장 관련 연체보험료(13.9만원)만을 납입하고 보험계약을 부활

☞ 개선前에 비하여 3.8만원(17.7만원-13.9만원)의 절감 효과 발생

(단위 : 원)

보 장 내 용	실효전 月 보험료	부활보험료 (연체보험료+이자-해지환급금)		부활이후 月 보험료
		개선前	개선後	
상해사망 및 고도후유장해	11,400	140,135	140,135	11,400
상해입원일당	4,548	55,906	55,906	4,548
골절진단비	4,495	55,255	55,255	4,495
운전자별금 (해지예정)	548	-6,762*	-10,231*	0
교통사고처리지원금 (해지예정)	5,469	-67,353*	-101,974*	0
계	26,460	177,181	139,091	20,443

주) A사 20년납 100세만기 40세남자, 자가용 운전자 가입 기준, 5년간 유지하다가 1년간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 상태인 계약의 부활을 가정함

* 부활시 (연체보험료+이자)금액보다 보장(특약)해지에 따른 해지환급금이 더 커서 (-)값 발생
☞ 세부내용은 (붙임)개선前·後 부활보험료 세부내역 비교' 참조

IV. 추진계획

- '17년 상반기중 보험회사별로 관련 업무지침 및 보험안내자료 등을 개선토록 추진
 - 전산시스템 변경 등을 요하지 않는 사항은 그 이전이라도 시정토록 독려

V. 기대효과 (국민들이 좋아지는 점)

-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일부계약의 부활이 가능해짐에 따라 연체보험료 납입 부담이 경감
- 새로운 보험계약을 추가로 가입하는 대신 기존 실효된 계약의 부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익 증대

개선前 부활보험료 세부내역

(단위 : 원)

보 장 내 용	실효전 月 보험료(A)	연체보험료 (B = A × 12)	연 체 이 자 (C)	해지환급금 (D)	부활보험료 (B + C - D)	부 활 이 후 月 보 험 료
상해사망 및 고도후유장해	11,400	136,800	3,335		140,135	11,400
상해입원일당	4,548	54,576	1,330		55,906	4,548
골절진단비	4,495	53,940	1,315		55,255	4,495
운전자벌금 (해지예정)	548	6,576	160	13,498*	-6,762	0
교통사고처리 지원금 (해지예정)	5,469	65,628	1,600	134,581*	-67,353	0
계	26,460	317,520	7,740	148,079	177,181	20,443

주) A사 40세남자, 20년납, 100세만기, 자가용 운전자 가입 기준. 5년간 유지하다가 보험료 미납으로 1년간 실효 상태인 상해보험계약에 대해 부활 및 일부 특약 해지를 가정

* 6년치(유지+실효기간) 해지환급금 상당액

개선後 부활보험료 세부내역

(단위 : 원)

보 장 내 용	실효전 月 보험료(A)	연체보험료 (B = A × 12)	연 체 이 자 (C)	해지환급금 (D)	부활보험료 (B + C - D)	부 활 이 후 月 보 험 료
상해사망 및 고도후유장해	11,400	136,800	3,335		140,135	11,400
상해입원일당	4,548	54,576	1,330		55,906	4,548
골절진단비	4,495	53,940	1,315		55,255	4,495
운전자벌금 (해지예정)	548			10,231*	-10,231	0
교통사고처리 지원금 (해지예정)	5,469			101,974*	-101,974	0
계	26,460	245,316	5,980	112,205	139,091	20,443

주) 위 개선前과 동일 조건의 계약상태에서 일부 특약을 제외(해지)하고 부활하는 것으로 가정

* 5년치(유지기간) 해지환급금 상당액